

● 제303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12.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임만균 의원 발의 】

의안번호 2765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임만균 의원 발의(찬성 28명)
- 나. 제안일 : 2021. 10. 14.
- 다. 회부일 : 2021. 10. 2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형·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매년 아동학대 전과자들이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아동학대 전과자들의 아동 관련 시설 취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지난해

6월 경북 포항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감금 등 아동학대가 알려진 뒤 보건복지부가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첫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38곳에서 총 230명의 학대 또는 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서 법령 및 제도 보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음.

- 이에 시장으로 하여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반복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아동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시장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제1항 신설).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아동관련 기관 운영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에 대한 시장의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제2항 신설).
-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해당 인원에 대한 시장의 해임 요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제3항 신설).
- 관련법령을 위반한 아동관련기관 시설 운영에 대한 시장의 폐쇄 요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반복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제안되었음.

2 주요사항 검토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안 제6조의2 신설)

- 동 개정안은 ①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의무화, ②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 선고받은 자에 대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의무화, ③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인원에 대한 시장의 해임 요구권, ④ 법령 위반 시설에 대한 시장의 폐쇄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무화하려는 내용임.
- 안 제6조의2제1항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4항¹⁾을 반영하여 시장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임.

1)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허가·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6조의2(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 ① 시장은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아동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u></p>

- 「아동복지법」 제29조의4²⁾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³⁾는 취업제한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에 대한 권한을 시·

2)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5⁴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 요구를 규정하고, 제2항에 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는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3)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8조의2 제2항 전단에 따른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3. 법 제29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4. 법 제29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5.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법 제29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3. 법 제29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4.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9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2. 법 제29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3.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4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 동 개정안 제6조의2제2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의무화, 제3항은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명령 기간 중에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시장의 해임 요구권, 제4항은 법령 위반시설에 대한 시장의 폐쇄 요구권을 명시하였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6조의2(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u></p> <p><u>② 시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u></p> <p><u>③ 시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u></p>

한다.

④ 시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 동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29조의5를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할 것임.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 등의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문 의 처

장일진 입법조사관 (02-2180-8148)